

# [신통일한국 기금운용 및 관리 규정] v2

제정 : 2024. 4. 1.

수정 : 2026. 5. 1.

## 제1장 총칙

### 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천일국 14년 '세가한본 제2026-112호(총무-77)'에 의거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(이하 "협회"라 한다)의 '신통일한국 기금운용 및 관리'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2조(적용범위)

'신통일한국 기금운용 및 관리'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의한다.

### 제3조(명칭 및 용어의 정의)

'신통일한국 기금운용 및 관리' 명칭은 "기금"이라 하며, 신통일한국 안착, 비전2027 승리를 향한 주요 정책방향에 맞춰 미래세대교육, 가정치유 및 가정행복교육,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국민적 기대 조성을 목적으로 지원한 금액을 의미한다.

## 제2장 기금개요

### 제4조(기금의 구성)

기금은 구체적인 목적을 정하여 적립하는 특정목적기금으로 한다.

### 제5조(기금의 재원)

기금의 재원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협회장(이하 "협회장"이라 한다)의 승인 하에 지원한다.

### 제6조(기금의 적립)

- 기금의 적립은 신통일한국 기금회계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.
- 기금은 협회의 교회지원 정책에 근거하여 기금통장으로 일괄 지급한다.

### 제7조(기금의 사용)

- 기금은 원금 및 원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.

- ② 기금의 이자수입 또한 해당 기금의 사용목적과 동일하게 사용하여야 한다.

#### **제8조(기금의 용도변경)**

- ① 적립된 기금은 용도 변경할 수 없다.
- ② 다만, 변경사용에 대한 사항은 협회 심의 및 협회장의 승인을 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### **제3장 기금운용 및 관리**

#### **제9조(독립계정)**

- ① 기금은 교회 일반회계와 구분하며, 특별계정으로 관리한다.
- ② 기금통장은 반드시 교회 명의로 별도로 개설하고 운용한다.
- ③ 단, 교회 명이가 불가능한 경우 협회의 심의를 거쳐 목회자 및 목회자 가족을 제외한 기금운영관리책임자의 명의로 개설하고 운용할 수 있다.

#### **제10조(기금 사용)**

- ① 기금은 **세가한본 제2026-112호(총무-77)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한다.**
- ② 기금 사용에 대한 협회의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 기금은 협회의 별도 지침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.
-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사용에 수반되는 경비(홍보비, 각종 수수료, 기타운영비 등)는 해당 용도로 인정한다.
- ④ 교회 당회장은 기금 사용에 관해 제직회와 반드시 협의한다.

#### **제11조(기금운용과 관리 계획 수립)**

- ① 효율적인 기금운용과 관리를 위해 매 연초에 회계연도의 운용 가능 자금규모를 추정하고, 연간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  - 1. 운용목표
  - 2. 운용 현황분석 및 전략
  - 3. 운용 계획
- ② 전항의 연간기금운용계획은 협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.
- ③ 섭리적 환경변화 및 자금 수급의 급변으로 인하여 연간기금운용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.

## 제12조(기금운용과 관리 원칙)

기금의 운용과 관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용과 관리하며,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러한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.

1. 투명성: 정직하고 투명하게 운용 관리한다.
2. 공정성: 공정하게 운용 관리한다.
3. 책임성: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를 획득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운용 관리한다.
4. 안정성: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성과 지속성을 갖도록 운용 관리한다.

## 제13조(기금운용과 관리 체계)

기금 운용과 관리의 조직체계는 기금감독 및 의사결정기관(협회), 기금운용과 관리(당회장, 책임자)로 구분하여 구성하며 주체 및 역할은 별도로 정한다.

## 제14조(기금운용관리책임자)

- ① 기금운용과 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리책임자(이하 "책임자"라 한다)를 둔다.
- ② 당회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, 소속 교회 식구 중에서 제직회의 동의를 거쳐 책임자를 임명한다.
- ③ 책임자는 교회 효정봉헌서 담당자로 하며, 목회자 및 목회자 가족은 책임자가 될 수 없다.
- ④ 책임자는 협회장의 승인을 받은 기금운용 및 관리 규정에 따라 기금을 운용 관리 지출한다.
- ⑤ 기금 운용 및 관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협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 수령 및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.

## 제15조(기금운용과 관리 보고)

- ① 책임자는 매년 협회가 정한 날에, 기금운용과 관리 내역 및 결산을 협회에 보고한다.

## 제16조(기금운용과 관리 장부)

- ① 책임자는 '기금운용과 관리장부'(이하 "장부"라 한다)를 작성, 비치하고 기금운용 상황을 판단할 수 있도록 보관 정리한다.
- ② 장부와 영수증 보관 기간은 5년이다.

## 제17조(의무 및 면책)

- ① 당회장 및 책임자는 기금 운용과 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.
  1. 공금을 관리하는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다.

2. 항상 청렴하고 공정하게 기금을 집행한다.
  3. 기금을 다른 목적으로 유용하지 않는다.
  4. 업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다.
- ② 당회장 및 책임자는 기금운용 및 관리 규정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였을 경우 손실 발생만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.

#### **제18조(기금운용관리 감독 및 감사)**

- ① 협회는 기금운용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권한을 가진다.
- ② 협회는 기금운용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 및 관리한다.
- ③ 협회는 기금 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나 과실이 드러날 경우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에 따라 신분상 처분(주의, 경고, 징계), 행정상 처분(개선, 통보, 주의, 경고, 시정), 재정상 처분(변상명령, 추징, 회수) 등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#### **제19조(기금의 해체)**

기금을 해체 하려할 때에는 협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체한다.

### **제4장 보칙**

#### **제20조(보칙)**

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회의 심의를 통해 시행한다.

#### **부칙(2026.5.1.)**

수정된 본 규정은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